

#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23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무상사용 기간(20년)이 종료('21.5월)됨에 따라 우리시로 반환되는 주차장임
- 나. 전문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  - 주차장명 : 장안1동 주차장
  - 주 소 지 : 동대문구 장안1동 392-3
    - ※ 민자운영기간 : 2001.05.29.~2021.05.28.(20년)
  - 시설규모 : 대지 1,121.2㎡, 연면적 2,445.7㎡(지상3층)
    - 주차구획 77면, 부대시설 7개소
  - 주차요금(예정) : 130원 / 5분, 월정기권 90,000원(3급지)



## 나. 주요 대행 업무

- 대행기관 : 서울시설공단
- 대행기간 : 7개월('21.5.29. ~ '21.12.31.)
  - ※ '16.12.30.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적용('17.1.1.~'21.12.31)
- 대행업무
  - 장안1동 공영주차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
  -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관리, 유지관리 및 개보수

## 다.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장안1동 공영주차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수익추구 보다 시민들의 주차편익 등 공공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설임.
- 서울시설공단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장안 1동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함으로써, 축적된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 활성화가 가능함.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
② ~ ③ 생략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'21년 예산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김수환(☎ 2133 - 2370)